

①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

-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/경기/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 · 중퇴한 자 또는 재학 · 휴학 중인 자
- *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,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

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
1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가. 본교가 서울 · 경기 ·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상의 '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'
- 나.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 · 경기 ·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(* 분교가 아닐 경우에는 '본교' 소재지 기준으로 판단)
 - 고등교육법 상의 '분교' 등록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학교 측에 사전 확인하시거나 채용홈페이지 Q&A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실 것
 - 분교운영 학교(예시) : 연세대 원주, 단국대 천안, 상명대 천안, 홍익대 세종 등
- 다.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 · 경기 · 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라.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2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

- 가. 본교가 서울 · 경기 · 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 · 경기 · 인천 지역대학
- 나.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다.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- 라.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③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1.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2.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3.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